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사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(2006.9.27)되고,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분리 제정(2006.9.27), 시행(2007.9.28)됨에 따라 「하수도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

### 2. 관련법령

「하수도법」 제41조, 제47조, 57조,  
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(안 제2조)
- 나. 분뇨수집.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(안 제3조)
- 다.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(안 제4조)
- 라. 수수료 부과 .징수(안 제5조)
- 마. 분뇨처리 수수료 부담(안 제6조)
- 바.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
##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오수·분뇨의 원활한 수집과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,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
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06. 9. 27부로 폐지되고,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6. 9. 27부로 분리 제정되어 2007. 9. 28부로 시행됨에 따라, 관련용어 정비를 통한 행정의 일체감 조성과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고
- 특히 중구 등 14개 구·군에서는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
- 또한 「하수도법」 등 관련법령에 오수·분뇨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8. 6. 19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